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3. 11.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 조정
(제2조 경과조치)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서,
“〈단서 삭제〉”를, 현행 단서인,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로 수정하고,
- 부칙 〈구미시 조례 제936호〉에서,
“제2조(경과조치)의 〈삭제〉”를,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로 위탁연도만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중
제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2. 안 구미시 조례 제936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u>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u>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 ----- ----- ----- ----- ----- ----- ----- ----- <u><단서 삭제></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 ----- ----- ----- ----- ----- ----- ----- ----- ----- <u>다만, 이</u> <u>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u>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부칙(구미시 조례 제936호) <u>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4년 1월 1일로 한다.</u>	부칙(구미시 조례 제936호) <u><삭제></u>	부칙(구미시 조례 제936호) <u>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u>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936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